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675호

2021.5.7.(금)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1-1402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제2021-1403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제2021-140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자치법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402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인사운영 변경 사항 반영 등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사운영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명칭 변경 및 직위 조정

(1) 보좌기관의 명칭 변경 (안 제3조제2항)

▶ 정책특보, 공보특보, 젠더특보 → 미래전략특보, 정무수석, 정책수석

(2) 대변인의 개방형 직위 신규지정 (안 제4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 6729, FAX: 02-2133-0822, E-mail: rasrad1357@seoul.go.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403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기구 신설을 통해 제38대 서울시정 핵심과제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소관 사무를 조정하여 조직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성과지표 달성도, 행정수요의 지속성, 기능수행의 효율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삭제 또는 자율신설기구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3조의2).
- 나. 주택정책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주택건축본부’ 를 확대·재편하여 ‘주택정책실’ 신설(안 제16조)
- 다. 지역발전 기능 일원화 및 권역별 강남·북 특화·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균형발전본부’ 신설(안 제18조 및 제21조)
- 라. 시민참여, 민관협력, 사회혁신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시민협력국’ 신설(안 제14조의2)
- 마. 창업지원체계 재구조화 및 금융·투자 지원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을 위해 ‘경제정책실’ 기능 강화(안 제6조).
- 바. 도시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서울형 생활물류네트워크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교통실’ 기능 강화(안 제8조).
- 사. 자율신설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시민협력국’ 으로 재편하고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시민협력국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24일까지로 규정(부칙 제7270호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 6732, FAX: 02-2133-0822, E-mail: kairos16@seoul.go.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40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주택공급, 1인가구 등 시정 핵심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수·조교 및 시의회사무처 인력 등 소요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발전본부(한시지구) 폐지 감원(3급 △1명).
- 나. 기존 조직 기능조정·재배치 및 시정 핵심사업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총 4급기구 개수 3개 증가(4급 +3명).
- 다. 주택공급·균형발전, 1인가구 및 청년 지원, 창업·4차산업 육성 등 시정 핵심사업 추진인력 증원(5급이하 +49명).
- 라. 서울시립대학교 학과 신설, 특별 교육수요 증가, 학생행정 운영 등을 위해 전임교수 및 조교 증원(전임교수+15명, 조교+6명).
- 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독립적 인사제도 마련 등 시의회사무처 정원 증원(5급이하 +6명).
- 바. 행정기구 신설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기관 간 정원이체(74명).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합의제)를 재편하여 ‘시민협력국’ (본청) 신설 등
 - ▶ (합의제) 2·3급 △1명, 4급 △4명, 5급 이하 △69명
 - (본 청) 2·3급 +1명, 4급 +4명, 5급 이하 +69명
- 사.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및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증원(+9명).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1) 고압전기안전관리 다군 +1
 - (서울대공원 8) 동물관리요원 나군 △1, 동물사육 나군 +5, 동물박제 나군 +1, 동물사육 다군+3
 - ▶ 서울대공원은 관리운영직 및 임기제 퇴직자 등 정원 상계조정(일반직 △8명)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 6732, FAX: 02-2133-0822, E-mail: kairos16@seoul.go.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